

# 교원주택융자금 지원 및 주거안정수당 지급에 관한 내규

제정 2000. 08. 11

개정 2009. 03. 01

개정 2010. 04. 01

## 1. 목 적

본 지침은 교원연봉제 운영규정 제21조에 근거하여 교원 주택융자금 지원 및 주거안정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주택융자금 지원

### 가. 지원 대상

본교 전임교원으로 본교 교수아파트 이외의 곳(출퇴근 가능거리)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자로 한다. 단, 주택관리규정 제20조(입주자의 의무)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총장이 신청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 나. 지원내용

대학은 주택융자금 지원 신청자의 매입 및 임차자금의 액수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세대 당 최대 오천만원까지 무담보 융자 알선한다.

다만, 2009년 3월 1일 이후 신규로 주택융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전임교원에게는 세대 당 최대 1억원까지 무담보 융자 알선하며, 그 상세 내용은 '3-1. 주거안정수당 확대 실시에 따른 특례'와 같다.

### 다. 지원 우선순위

주택융자금 지원 우선순위는 지원신청서에 명기된 교수아파트에서 이주해 나가는 날짜(신규임용 교수 중 미입주자는 본 대학 임용예정일자)가 빠른 순서에 의하되, 이주날짜(또는 임용예정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임용일자, 가족 수, 생년월일 순으로 한다.

### 라. 지원인원

주택용자금 지원인원은 본교 교수아파트 수급상황과 연간 소요자금을 고려하여 매년 법인과 협의하여 정한 인원 범위 내로 한다.

마. 지원횟수

주택용자금 지원은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며, 부부교원인 경우에도 이중 지원은 하지 않는다.

3. 주거안정수당

가. 지급대상

주거안정수당 지급대상자는 본 지침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용자금을 용자받은 교원으로 한다.

나. 지급내용

본 지침 제3항 "가"에 따른 주거안정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본인이 용자받은 주택용자금에 대한 매월 이자해당액을 주거안정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주택용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본인이 받았던 주택용자금을 기준으로 본 대학의 주거은행인 우리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 금리 해당액을 급여와 함께 주거안정수당으로 지급하되, 그 기준은 매년 3월 2일 전국은행연합회 고시 금리를 연간 고정하여 적용한다.

다. 일괄징수

본 지침 제2항에 따른 주택용자금에 대한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할 이자액은 보수 지급 시 대학이 일괄 징수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라. 지급기간

주거안정수당 지급기간은 본 지침 시행일인 2000. 8. 11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은 최대 25년까지로 하며, 2000. 8. 12 이후 신규 임용되는 교원은 임용 시 명시된 주택지원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주거안정수당 지급대상자가 본 대학을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해당 월까지 지원하되, 그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퇴직일이 해당 월 15일 이전인 경우 : 해당 월까지 지급

② 퇴직일이 해당 월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 월의 익월까지 지급

### 3-1 주거안정수당 확대실시에 따른 특례

2009년 3월 1일 이후 확대 실시되는 주거안정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지원내용

대학은 주택용자금 지원 신청자의 매입 및 임차자금의 액수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세대 당 최대 1억원까지 무담보 용자 알선한다.

#### 나. 지급내용

주거안정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본인이 용자받은 주택용자금에 대한 이자 해당액을 급여와 함께 지급하되, 그 기준은 매년 3월 2일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협의된 포항공과대학교 임직원 집단대출 금리 중 최저 금리를 연간 고정하여 적용한다. 이 때, 기준 금리 및 개인 신용도 변경에 따른 금리 증감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다만, 연도 중 기준금리의 급등으로 인하여 실납부 이자와 수당 지급액의 괴리가 크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4. 의무사항

가. 제2항의 주택용자금은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하며, 주택용자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대학이 지급하는 주거안정수당에 대하여 법적으로 과세되는 세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 제2항의 주택용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개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신청서에 명기한 이주날짜보다 교수아파트에서 이주해 나가는 날짜가 늦어질 경우 일정액(매월 대학이 부담한 이자액  $\times$  150%  $\div$  30  $\times$  지체일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라. 제2항의 주택용자금을 지원받은 세대는 이후 교수아파트에 재입주 할 수 없다.

### 5. 주택용자금지원 신청 시기 및 절차

가. 신청 시기

구 분		신청 시기
매입 자금	기존주택구입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	1차 중도금 납부 후
	재개발	주택배정 후
임차자금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 단, 교수아파트에서 이주해 나갈 예정일 2개월 이전에는 신청 불가

※ 기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으로 이주코자 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함.

※ 신청 시 구비(제출)서류

- ① 주택용자금 지원 신청서 1부 (신청서 서식 : 별표1)
- ② 주택매입(임차) 계약서 사본 1부
- ③ 용자금 입금할 통장사본 1부
- ④ 신용카드 신청서 1부 (카드발급 희망자)

나. 절차 : 별표2

다. 주택용자금 지원 승인여부 판단기준

- ① 교수아파트 수급상황
- ② 연간 지원 대상 범위 (매년 초 공지)
- ③ 미등기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시는 불가. 단, **분양** 또는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가능
- ④ 주택매입 또는 임차지역은 출퇴근 가능한 거리이어야 함
- ⑤ 기타 사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회통념상의 관례에 의거함

<별표 1>

## 주택용자금 지원 신청서

교무팀	담 당	팀 장

재무회계팀	담 당	팀 장

소 속		성 명		직 번	
주 소					
교수아파트이주예정일		본교임용일			
동거가족수		주민등록번호			
용자신청금액	금 원 (₩ )				
신청구분	주택매입자금( )		주택임차자금( )		

※ 교수아파트 이주예정일 2개월 이전에는 신청 불가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서류 :

1. 주택매입(임차) 계약서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부
3. 용자금 입금할 통장사본 1부

<별표 2>

## 주택용자금 지원절차

